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8절 개체교회 담임자

【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

- ①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신설)
- ③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신설)

제9절 부담임자

【142】 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가 지명하거나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82】 제81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개정)
- ②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 은퇴할 수 있다.
- ④ 연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 ⑤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한다.

【188】 제87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을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 ② 감리사는 지방 안의 교역자(서리전도사 포함)와 장로의 인사문제를 관리한다.
-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 실행부위원회, 지방 인사위원회 및 구역 인사위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④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감리사가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할 때는 감독에게 소집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감리사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구역 인사

개정 법률

위원회는 감독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 ⑥ 감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서나 개체교회를 통해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기독교교육사업
 3. 사회봉사사업과 농촌사업
 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 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지방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 ⑧ 감리사는 지방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 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감리사는 지방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문서로 매년 보고한다.
- ⑫ 감리사는 지방 및 교회의 통계표와 기타 역사 자료를 수합하여 보존하며 감리사 인수 인계 목록에 삽입하여야 한다.
- ⑬ 감리사는 지방 내 불성실한 교역자를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 ⑭ 감리사는 개체교회 담임자가 유고되어 기획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담임자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신설)

제 5 장 감독과 연회 본부

【196】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1인이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 ③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개정)

개정 법률

제 8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232】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개정)
-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 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 ③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개정)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서부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를 관리한다. (개정)
- ③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 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 ⑤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 ⑥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 ⑦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 ⑧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⑨ 감독회장은 임기 중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직책상 위원이 된다.
- ⑩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
- ⑪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명한다.
- ⑫ 감독회장은 행정기획실장을 천거하고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명한다.
- ⑬ 감독회장은 각 국 총무, 원장, 실장의 제청을 받아 부총무 및 부장을 임명한다.
- ⑭ 감독회장은 연수원 원장을 천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⑮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다.
- ⑯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⑰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⑱ 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회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⑲ 감독회장은 총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거나 총회 장정 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 ⑳ 감독회장은 월간 기독교세계 와 주간 기독교타임즈 의 발행인이 되며 주간 기독교

개정 법률

타임즈 의 이사장이 된다. 다만, 주간 기독교타임즈 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

- ㉑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275】 제174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 미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이명 해 오는 경우에는 연회개최 전까지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시무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아 연회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미연합감리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미연합감리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79】 제178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에 따라 국외 감리교회에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 ②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교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 ③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정회원 목사**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연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국외감리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국외감리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 ④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들은 본 감리회가 그 신급대로 받는다.

부칙(2012. 9.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제 4 편 의회법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306】 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서리담임자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제 3 장 구역회

제 1 절 구역회

【327】 제33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현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 ④ 구역회는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개정)
- ⑤ 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단행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 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신설)

제 4 장 지 방 회

제 1 절 지방회

【339】 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

- 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

개정 법률

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개정)

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43】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로 안수하며 신천장로, 복권되는 장로, 이명 장로를 파송한다.
 1. 당회에서 천거한 신천고시과정 장로와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에 대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임명을 의결한 후 장로증서를 준다.
 2. 모든 과정을 마친 장로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한 후 장로안수를 한다.
- ② 연회 준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 회원 허입을 연회에 청원한다.
- ③ 각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을 선출한다.
- 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⑤ 지방 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한다.
- ⑦ 각 교회별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 ⑧ 지방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물품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
- ⑨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
- ⑩ 지방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지방회에 교회현황을 문서(별도양식 참조)로 매년 보고한다.
- ⑪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 ⑫ 지방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따라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분할 건의안을 연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분할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 여성교회회장은 당연

개정 법률

- 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⑭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 (신설)

제3 절 지방 실행부위원회

【355】 제61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
- 지방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분석
- 지방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
-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 지방 내 교회의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또는 민사, 형사상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조정하여 화해를 도모한다.(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 : 개척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 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지방회가 단행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의 심의
- 그 밖의 지방회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7장 연 회

제1 절 연 회

【383】 제89조(연회 의장) 연회의 의장은 감독이 된다. 감독이 불참한 경우에는 감리사 중 **연 급 순, 연장자 순**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385】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

개정 법률

을 명한다.

2. 2년 간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미과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는 감독이 휴직을 명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연회 회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파송을 청원하면 감독에게 해당교역자를 파송하도록 요청한다.
 4.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④ 연회는 과정보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 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⑥ 연회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 ⑦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⑧ 연회 행정재판위원은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하여 7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⑨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이 감리회 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다.
 - ⑩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그 연회 감독이 이사로 파송된 대학교에는 이사를 파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거부하는 신학대학교의 출신자는 감리회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지 아니한다.
 2. 연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하였거나 토지, 건물, 재정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감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교육기관 제외)을 관리하고 이사 또는 위원을 선출 파송한다.
 -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과

개정 법률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원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2.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3.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4.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연회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6.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7.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8. 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9.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10.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11. 연회는 주간 기독교타임즈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2. 연회는 총회 행정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3. 연회는 총회 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4. 연회는 총회 특별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5. 연회는 총회 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6. 연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7. 연회는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8. 연회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9. 연회는 연수원 운영위원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 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개정 법률

따라 처리한다.

- ⑮ 연회는 제3편 제4장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 ⑯ 연회는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⑰ 은퇴한 회원(자원은퇴 포함)은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각 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은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 ⑱ 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규정된 분할 요건을 갖추면 연회분할 건의안을 채택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개체교회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연회에는 관리자를 둔다.
- 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 ㉑ 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에 준하되 총회 실행부위원 외에 본부에 파송하는 각종 위원과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
- ㉒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신설)**

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

【387】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 ① 과정고시위원회 : 연회 협동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재허입하고자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고시 과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회에 보고한다.** 과정고시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개정)
- ② 자격심사위원회 :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 ③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 본부의 선교정책에 따라 연회의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 ④ 교육사업위원회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정책에 따라 사회평신도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 ⑥ 재정위원회 : 연회의 재정 조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회 재정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 ⑦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 각 지방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상황을 조사한다.
- ⑧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 연회 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검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보존하게 한다.

개정 법률

- ⑨ 건의안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 다만, 건의안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⑩ 지방분할경제조정위원회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 ⑪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
- ⑫ 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 ⑬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연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되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⑭ 행정재판위원회 :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한 2명(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조직한다.
- ⑮ 투표위원회 : 연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표시에 회원 수 및 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투표업무를 담당한다.
- ⑯ 운영위원회 : 연회 회기 중 연회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⑰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393】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심사
- 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
- 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
- ④ 연회 및 지방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
- ⑤ 연회 및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
- 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
-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 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
- ⑩ 연회 각 협동총무의 선출
- ⑪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감독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개정 법률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⑫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신설)

제 8 장 총회

제 1 절 총회

【408】 제114조(총회 의장) 총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나 감독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411】 제117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기 종료 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감독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직전 회기의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회기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 ② 임시 총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 또는 총회 대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신설)

【413】 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교회의 총괄적 정책수립 : 총회는 감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② 감리회 본부 설치 : 총회는 의결된 정책을 기획하고 연회를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리회 내의 통신사업과 홍보사업을 위해 서울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한다.
- 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 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개정)
- ⑤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 총회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위하여 총회 특별위원회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

개정 법률

재단을 설립하고 감리회에 속한 모든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게 한다.
유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을 설립하고 교역자의 은급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 ⑧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 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장학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 1. 총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감리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 2. 총회는 감리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
 - 3. 총회는 교회연합기관과 특수선교기관에 이사 또는 위원을 파송한다.
 - 4. 총회에서 파송한 이어나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가 단한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
 -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단한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파송을 취소한다.
- ⑫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대학교 총장 인준 :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총장의 인준은 총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총회가 단한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⑬ 입법의회 회원 선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
 - 1. 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 회원의 1/3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
 - 2. 연회별로 후보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한다.
 - 3. 연회 감독은 입법의회 회원이 선출되는 즉시 이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개정 법률

4.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대로 연회별로 2명씩(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의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⑭ 총회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 ⑮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 ⑯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위원은 가급적 법전문인으로 한다.
- 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임감독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 ⑱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 ⑲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교역자 20명, 평신도 2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전임감독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
- ⑳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 ㉑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지명하는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 ㉒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 ㉓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 ㉔ 선교연회 조직 : 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 ㉕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 ㉖ 임시 총회의 직무는 임시총회 소집 안전에 한한다. (신설)

제 9 장 입법의회

제1절 입법의회

[419] 제125조(입법의회 조직) 입법의회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선출직 회원 :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정수는 총회 회원의 **3분의 1**로 한다.
- ② 직권상 회원 : 감독회장 및 각 연회 감독

개정 법률

- ③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입법의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 ④ 임명직 회원 : 입법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 중에서 감독회장이 임명한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
- ⑤ 선출직 회원 중 결원 및 이명자가 생기면(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참석불가를 입법의회 개회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후보회원이 그 순위에 따라 지위를 계승한다.
- ⑥ 입법의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입법의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433】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개정)
-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 ③ 당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 ④ 본부 감사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434】 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 ④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 ⑤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 ⑦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감독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⑧ 감독회장의 결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개정 법률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신설)

제 11 장 총회 특별위원회

제6절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455】 제161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법조인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집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457】 제163조(직무)

- ①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 ③ 위원장은 유권해석 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신설)
- ④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 ⑤ 유권해석의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다 의견수로 결정한다. (신설)
-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 4. 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부칙(2012. 9.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신설)

제 7 편 재판법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884】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 ⑮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신설)**
-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신설)**

【885】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 ⑧ **교역자가 소속된 교회의 이성 및 동성 간에 간음을 하였을 때 (삭제)**

개정 법률

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886】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⑬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 제⑧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⑤항, 제⑥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개정)**
 -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 ⑤ 제3조(범과의종류)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 (신설)**

【892】 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의 범과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개정)**

【900】 제19조(심사기간)

-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915】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재판은 법정 위원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판을 개최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재판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을 선출하여 재판을 개최한다.
- ③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임회하여야 한다.
- 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 ⑥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1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개정 법률

【916】 제35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기소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이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 ③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변호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인은 예외로 한다.
- ⑤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939】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 ①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상소심의 재판에서는 상소심 심사위원장과 1심에 참여한 심사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소권을 유지한다.(신설)**

부칙(2012. 9.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신설)

제 8 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1012】 제1조(목적)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독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양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0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라 함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를 말한다.

【1014】 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할 하에 그 연회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개정)

- ①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통해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 다만, 당선자가 없으면 재선거한다. (신설)
- ③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선관위가 공포한다. (신설)
- ④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개정)
- ⑤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 한다. (신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개정)

【1015】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 ①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과 감독회장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 ② 연회(미주특별연회 포함)에 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 (신설)
- ③ 연회 선관위는 해당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016】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미주특별연회는 별도로 구성하되 2배수의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다. (개정)

개정 법률

- ②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개정)
- 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그 교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017】 제6조(관장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신설)
 - 2. 선거관리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신설)
 -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 5.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 8.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개정)
 - 9.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 10.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 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 하에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1018】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 1인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②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각 연회 선관위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로 한다. (개정)
- ③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하며,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서기 : 선거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서기 1인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제7-1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선거 기간 중 약간 명의 일용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개정 법률

【1019】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1020】 제9조(상임위원회) (신설)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신설)
- ② 상임위원회는 선관위의 위원장과 서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 ③ 상임위원회는 선관위가 위임한 사항과 선관위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고, 선관위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정리한다. (신설)

【1021】 제10조(의결정족수)

- 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 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신설)

【1022】 제11조(선거 시행의 공고)(개정)

-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15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신설)
- ③ 선거일은 등록 후 20일 이내로 정한다. (신설)

【1023】 제12조(피선거권)

- ① 감독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 ② 감독회장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개정 법률

- ③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2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2항**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해야 한다. (개정)**
- ③ **연회 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삭제)**
-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삭제)**
- ④ 감독,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 ⑤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 ⑥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⑧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 ⑩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개정)**

【1024】 제13조(선거권)

- ①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개정)
-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 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025】 제14조 (선거인 명부)

-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2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개정)**

개정 법률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1026】 제15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개정)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신설)

【1027】 제16조(후보자의 등록)

①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2. 이력서 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 발행) 2통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 (개정)
6. 선거공보 원고(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통 (개정)
7.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 (개정)
8.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2통 (개정)
9.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10. 제7편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2통(연회 발행) (신설)
11.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12.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2통
13.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2통(개정)
14.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1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② 현직 감리사가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 개시 3개월 전까지 사퇴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028】 제17조(후보자 등록 심의)

-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설)
- ② 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요건을 등록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을 때에는 보완하게 한다. (신설)
-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정 법률

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지체없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그 후보자의 등록 가부를 결정한다. (신설)
-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1029】 제18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개정)

- ① 후보자 기호가 정해진 때에는 지체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을 공고하며,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 (신설)
- ②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되거나 취소된 때에도 지체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 5 장 선거운동 (신설)

【1030】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31】 제20조(선거감시단) (신설)

-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선거감시원 2인(교역자 1인, 평신도 1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신설)
- 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 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 ④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 ⑤ 선거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신설)

【1032】 제21조 (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

-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
- ②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
- ③ 감리사
- ④ 선거관리위원

【1033】 제22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 ①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연회별, 지역별 합동정책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삭제)
- ② 선관위는 연회별 합동 정책발표회 및 토론회를 3회 이내 주관해야 한다. (삭제)

개정 법률

-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 홍보 명함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④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후보자별로 동일 규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삭제)
- ⑤ 제4항의 홍보물에는 최근 4년간 교회 실태(입교인수,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 ②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7분 이내의 동영상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신설)
-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동영상을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034】 제23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개정)
-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 ③ 유권자에게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삭제)
-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개정)
-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 (개정)
-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개정)
- ⑥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개정)
-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개정)
-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개정)

【1035】 제24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신설)

- ① 후보자나 선거감시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

개정 법률

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다. (신설)

- ② 선거감시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 명령 준수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제 6 장 투표와 개표 (신설)

【1036】 제25조(투표소)

- ①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여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 ② 투표소에는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개정)
- 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 (개정)

【1037】 제26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 제00회 총회 감독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개정)
- ②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 (개정)
-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선거 투표용지는 자체 제작한다. (신설)
-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1038】 제27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신설)

【1039】 제28조(우편투표) (신설)

- ① 미주특별연회는 감독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 ② 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 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 (신설)

【1040】 제29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1041】 제30조(개표)

-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개정)
- ② 투표와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와 개

개정 법률

표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당선자 공포는 최고 득점자를 선관위원장이 공포하고 총회에서 취임한다. (삭제)

④ 동점일 경우에는 연급 순으로 하고 동급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삭제)

⑤ 개표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개정)

【1042】 제31조(무효표)(개정)

①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개정)

1.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개정)
2. 선관위 직인과 위원장 날인이 없는 것 (개정)
3.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신설)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개정)
5.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6. 기표가 없거나 여러 난에 기표된 것 (신설)
7. 문자나 기호가 기재된 것 (신설)
8. 다른 투표함에 넣은 것 (신설)

② 무효표는 선관위가 판정한다. (신설)

【1043】 제32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신설)

- ① 투표와 개표는 각 연회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가 투표절차와 개표절차를 관리한다. (신설)
- ②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소나 개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신설)
- ⑤ 참관인이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때에는 참관인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 (신설)

제 7 장 보칙 (신설)

【1044】 제33조(보궐선거)

- ①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 ②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개정 법률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③ 보선된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한 회기의 재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삭제)

【1045】 제34조(직무대행)

①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감독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②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감독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신설)

【1046】 제35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입후보자의 등록금(50%)과 본부 예산(50%)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신설)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신설)

⑤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잔여금은 기독교대한 감리회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개정)

【1047】 제36조(선거법 위반의 처리)(개정)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2주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048】 제37조(벌칙처벌)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23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4

개정 법률

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 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23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 ③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⑦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 ⑧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⑨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 ⑩ **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가 일정기간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부칙(2012. 9.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제 30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38. 미주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치법 (신설)

제1조 (목적) 이 법은 미주특별연회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2조 (기간 및 관할) 미주특별연회는 제 29회 총회 임시감독회장 선임이후 제 30회 총회 회기 종료일까지 감독회장의 관할 하에 다음 각 항을 행한다. (신설)

- ① 미주특별연회는 화합과 정상화를 위하여 이 기간 동안 제 30회 감독선거를 유보하고 화합과 정상화 이후 감독 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 ② 감독회장은 미주특별연회 회원 중에서 정상화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 ③ 감독회장은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제 30회 총회 회기 종료일까지 전권을 가지고 미주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부칙(2012. 9.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호남선교연회 특별법(신설)

제1조(호남선교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선교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호남선교연회(이하 선교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장정 [215] 제114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에 의거 호남지역의 각 지방과 교회들로 조직하며 선교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 선교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선교연회 본부를 둔다.

- ① 선교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 ② 선교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3길 40 2층에 둔다.

제3조 (선교연회 본부의 조직) 선교연회는 감독회장이 관리한다. 선교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 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 ① 감독회장 (연회 관리감독)
- ② 관리자 1인(유급)
- ③ 선교부 협동 총무
- ④ 교육부 협동 총무
-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 총무

개정 법률
<p>제4조 (선교연회의 관리자)</p> <p>① 선교연회 관리자는 감독회장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선교연회 관리자는 직책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이 된다 .</p>
<p>제5조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은 연회 정회원으로 15년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p>
<p>제6조 (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p> <p>① 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② 선교연회 관리자의 선출은 관리 감독의 추천으로 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제7조 (선교 연회의 조직) 선교연회는 감독회장,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개정)</p>
<p>제8조 (선교 연회의 직무)</p> <p>① 선교 연회의 직무는 연회직무에 준한다. 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회장이 주관한다. 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총회실행부위원을 제외한 감리회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과 각 위원회 위원(교역자 평신도 역순)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심사·재판·조정과 관련된 위원을 제외한다. ⑤ 선교 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p>
<p><u>부칙(2012. 9. 25)</u></p>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설)</u></p>